

퇴직연금제도 교육



교육순서

퇴직연금제도 교육



1

퇴직연금제도 도입과정

2

퇴직연금제도 운영과정

3

퇴직연금 지급과정

4

퇴직연금제도 과세체계

1

퇴직연금제도 도입과정



퇴직연금제도 일반에 대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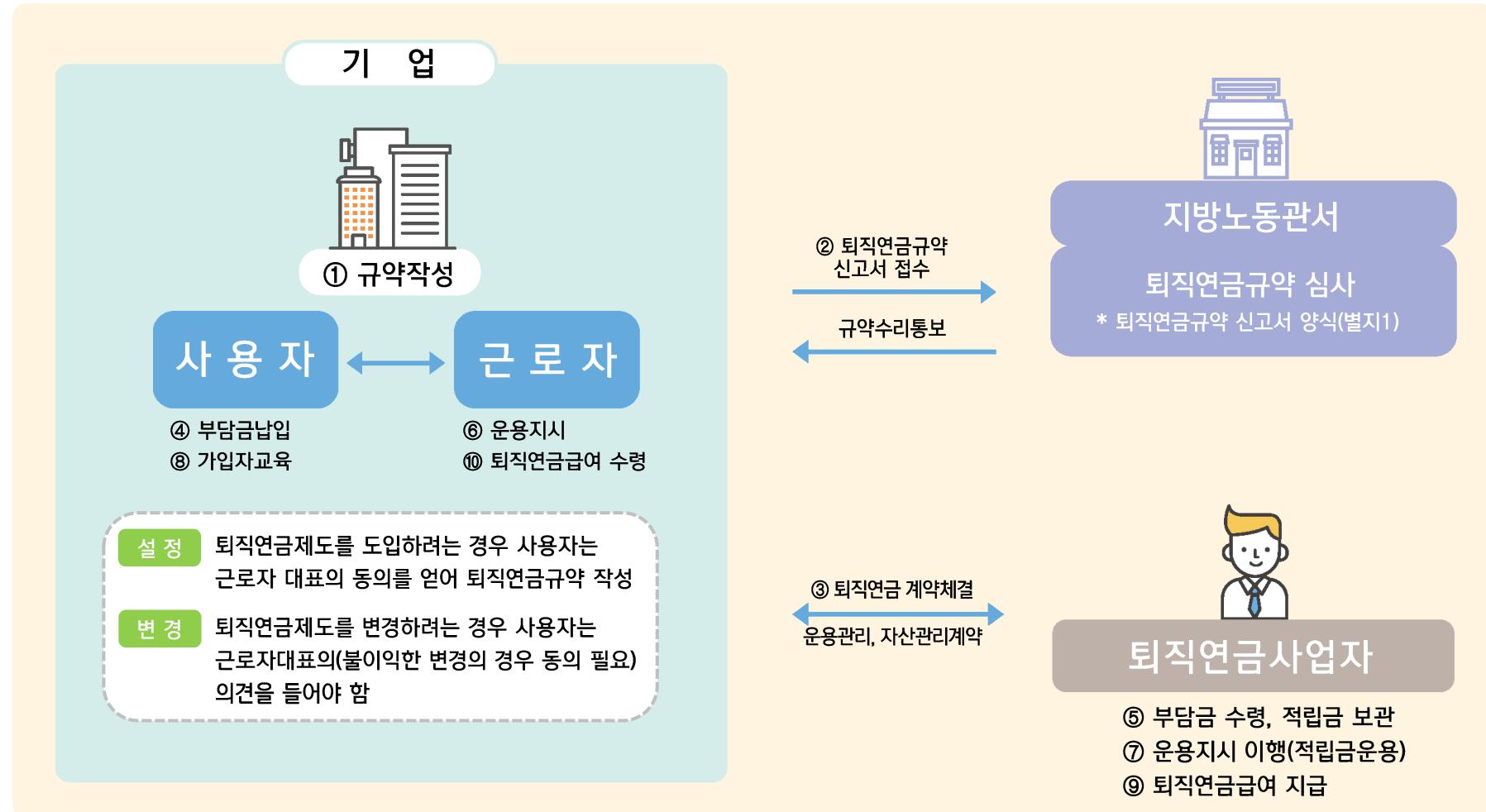
: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퇴직연금제도란?

- ✓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 ✓ 퇴직연금제도는 DB(확정급여)형제도와 DC(확정기여)형제도로 나뉘며, 회사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 ✓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절차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제도별 특징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사용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금=

퇴직 전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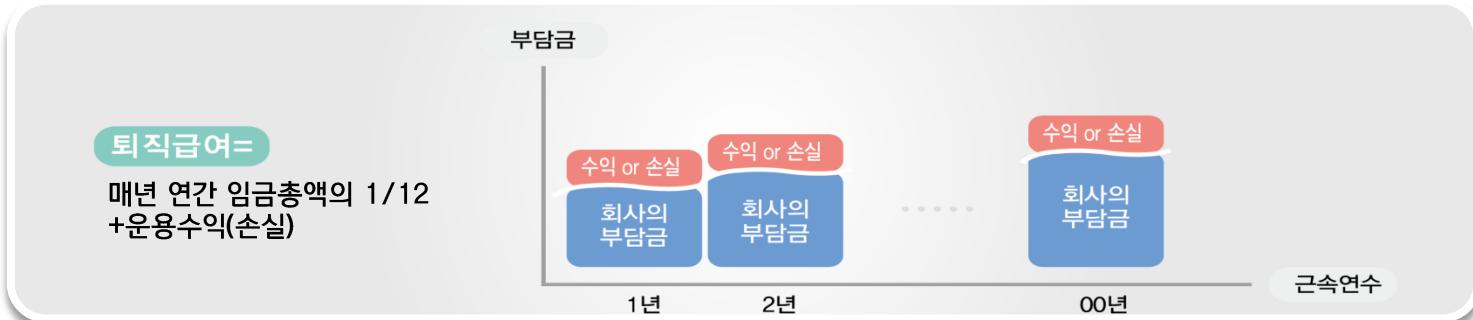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근로자의 DC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 시 부담금과 운용손익까지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 부담금 : 연간임금총액의 1/12
- 근로자가 개인자금을 추가로 DC계좌에 납입하면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급여종류	수급요건
연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연금 수급 시점 연령 55세 이상,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일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연금수급 요건 미 충족시,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관한 사항

임금이란?

-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항)

임금총액 판단기준(예시)

✓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항목

1. 지급조건,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근거가 정해져 있는 경우
2.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인 경우

✓ 퇴직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1. 일시적 · 돌발적 사유로 지급된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해외파견수당 등)
2.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거나, 사업주의 포상적 · 은혜적 급부(경조사비 등)
3. 현물,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급식, 교통비 등)

2

퇴직연금제도 운영 과정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DB형:재정검증)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 하여야 합니다.

* 의무 적립률: '12~'13년 60%, '14~'15년 70%, '16~'18년 80%, '19~'20년 90%, 21년 이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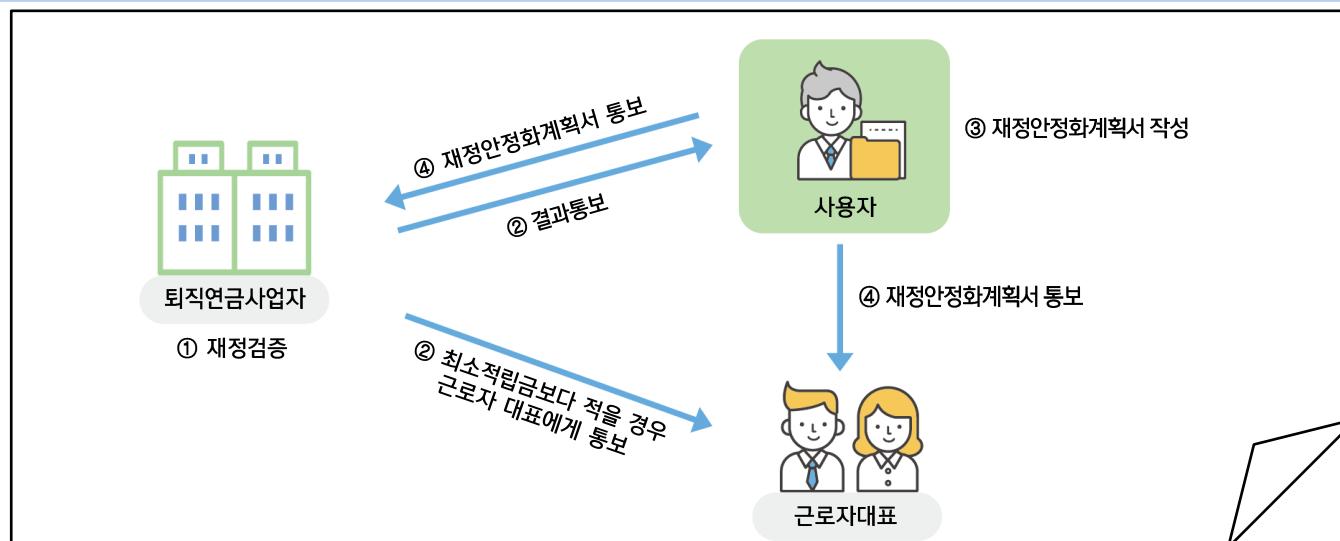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류 후 6개월 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자대표에게도 통보

또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100에 미달한 경우 사용자는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후 60일 내에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립금 부족을 3년 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방안 등을 포함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DC형:지연이자 납입)

- ✓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 ✓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및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대수익 손실 방지를 위해 정기 납입일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용자는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 이자율은 연 20%이나, 정기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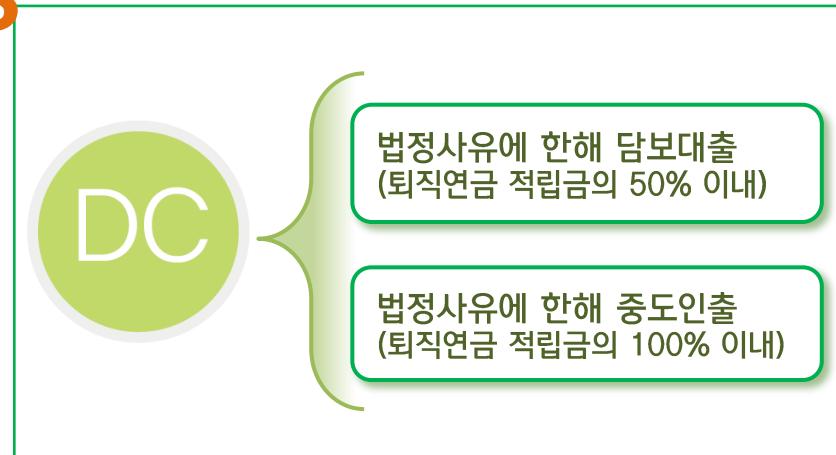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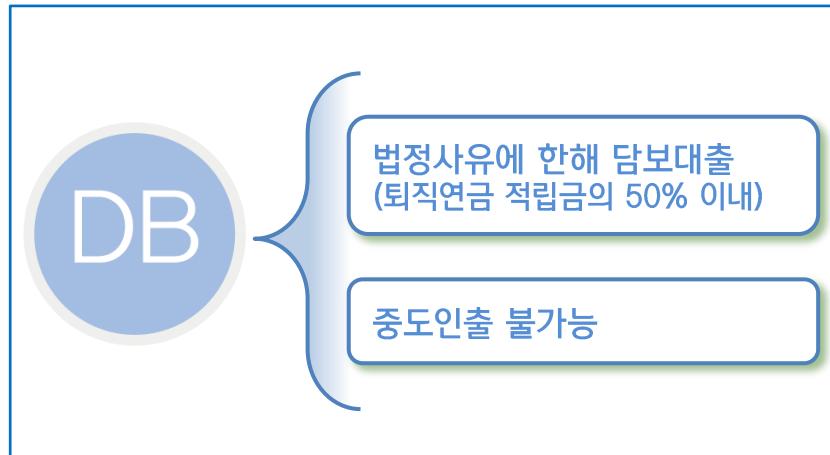
다만, 천재지변, 사업장의 파산 · 회생, 타 법령상의 제약, 퇴직급여 지급의무 존부의 다툼 등으로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됩니다.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

퇴직연금제도 유형에 따라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 활용 가능

- ✓ 퇴직급여는 퇴직 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유형에 따라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VS



퇴직연금 담보대출

담보대출 사유 [근퇴법 시행령 제2조]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 임차보증금 부담 하는 경우(단,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중 1회 限)
3.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4. 과거 5년 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5.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 하는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도인출 사유 [근퇴법 시행령제14조]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 임차보증금 부담 시(단,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중 1회 限)
3.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4. 과거 5년 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 신청방법

-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 사유별 필요한 서류 등의 절차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중도인출 및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 소득세의 세금 계산, 중도인출 시 기 운용 중인 상품의 매도 처리 등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교육

-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입자 교육

교육 내용 및 방법

가입자 교육사항은 제도일반교육과 제도유형별(DB/DC 등)교육으로 구분됩니다.

공통사항: 제도일반 교육 및 방법

교육내용: ①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②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 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④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⑤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⑥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⑦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 다만,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 하여야 함

가입자 교육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한 경우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

교육내용: ①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②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③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④ 재정 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사항 ⑤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 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② 직원 연수 · 조회 · 회의 · 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③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④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등 ①~④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함

가입자 교육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경우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내용: ①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②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 계약서에 관한 사항 ③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④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 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 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② 직원 연수 · 조회 · 회의 · 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③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등 직원 ①~③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함

3

퇴직연금 지급 과정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퇴직시(이직시) 퇴직급여 수령방법(IRP 이전)

- ✓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급여를 IRP 계정으로 지급 받아야 하며, IRP계정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 ✓ IRP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IRP이전 예외사유

- ①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③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IRP 이전방법 및 절차

- ✓ 가입자는 퇴직 전, 금융기관에서 IRP계정을 개설합니다.
- ✓ 가입자는 회사에 본인이 개설한 IRP계정을 통보해줍니다.
- ✓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DB, DC사업자)에게 가입자의 IRP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조치합니다.
(단, DC가입자가 현재 운용중인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하길 원하는 경우 IRP계정으로 현물이전 가능)
- ✓ 회사의 지급조치가 없는 경우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퇴직연금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IRP 이전 시 효과

- ✓ IRP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을 수령할 때까지 퇴직소득세의 납부를 연기해주는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합니다.
- ✓ IRP 운용기간에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및 원리금 비보장 상품을 운용하여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가입 이후 55세가 넘으면 연금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P 운용방법 및 상품

원리금 보장

변동금리

고정금리

원리금 비보장

펀드

국내상장
주식

기타

주식형

혼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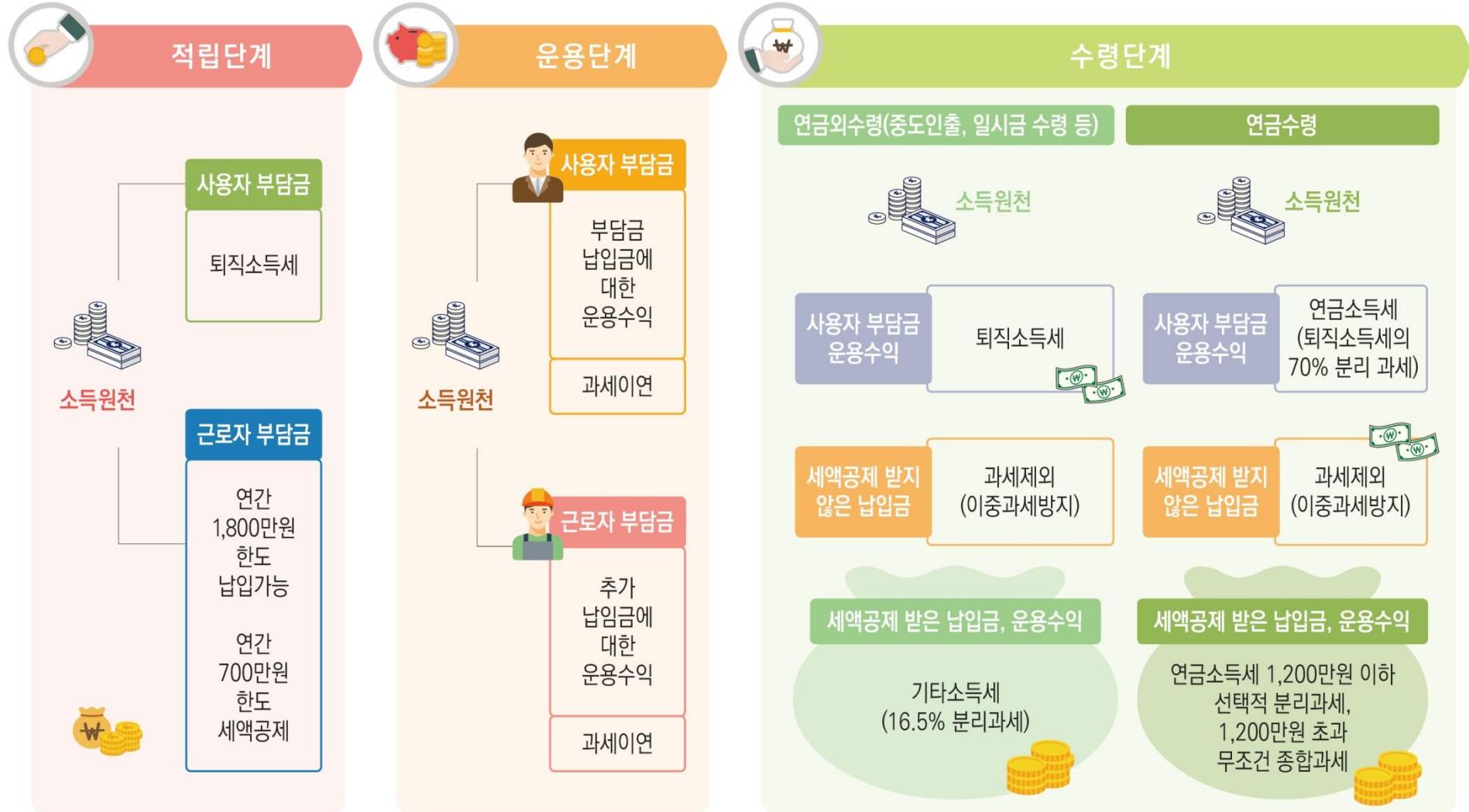
채권형

4

퇴직연금제도 과세체계



퇴직연금 과세체계



퇴직연금 과세체계

DC, IRP 근로자 추가납입금 세제혜택

- ✓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DC, IRP)에 부담금을 납입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세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는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text{만원} \times 13.2\%$
92만 4천원 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700\text{만원} \times 16.5\%$
115만 5천원 공제

퇴직연금 과세체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보다 30%의 세액 경감

- ✓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 대비 30%의 세액을 경감해줍니다. 또한 발생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30%
↓



이연퇴직소득세 × 일시금 수령액 /
이연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 수령액 /
이연퇴직소득 × 70%

예) 퇴직급여가 1억,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3.55%일 때, 일시금 수령 시 355만원을 모두 내야하지만, 10년간 연금수령을 선택하면 매년 24만9천원씩 10년간 납부하면 된다.

연금수령시 일시금 수령시 대비 30% 세액 경감되므로 퇴직소득세 249만원 발생, 249만원을 10년간 나누어 납부하므로 연간 24만 9천원씩 납부

퇴직연금제도 폐지 및 중단시 처리

-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퇴직연금 제도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조치사항

-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적립금현황, 제도 폐지사유 및 미납부담금 처리방안을 기재하여 지방노동관서에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회사의 적립금 및 미납부담금 현황 및 미납부담금의 해소방안(DC형), 중간정산 대상기간 등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미납부담금이 있는 경우 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가 제도 폐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으로 간주

✓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의 기본적 업무

- 제도 중단 시 사용자는 중단 사유, 재개시 일정, 미납부담금 처리방안(DC형) 등을 가입자에게 공지하고
-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교육, 급여 지급, 적립금 운용 등 법령상 기본적 업무 계속 수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 혼합형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발급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사업명(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종(주산품)	
	상시 근로자 수	명	노동조합원 수	명
	주소			

구분	기재사항
평균 재직기간	개학 년
임금 체계	연봉제 / 호봉(연공급)제 / 직무급제 / 기타
종전 퇴직금제	단수(법정)제 / 누진제 / 기타
증전 퇴직금 처리	퇴직금제 유지 /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포함(소급)
퇴직연금 소급기간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6년 미만 / 6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퇴직연금 도입 제안자	근로자 / 사용자 / 기타
퇴직연금 도입 사유	근로복지 / 노무편의 / 세제혜택 / 정책부응 / 퇴직연금사업자의 권유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권유 / 기타
퇴직급여제도 형태	<input type="checkbox"/>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input type="checkbox"/>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input type="checkbox"/>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른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뒤쪽 참조) <input type="checkbox"/> 퇴직급여제도 [해당 사업(사업장) 적용 퇴직급여제도에 모두 표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연금규약을 신고(신규/변경)합니다.

신고인(사업장 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첨부 서류

 1. 퇴직연금규약(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작성한 서류를 추가합니다)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최초 신고의 경우 및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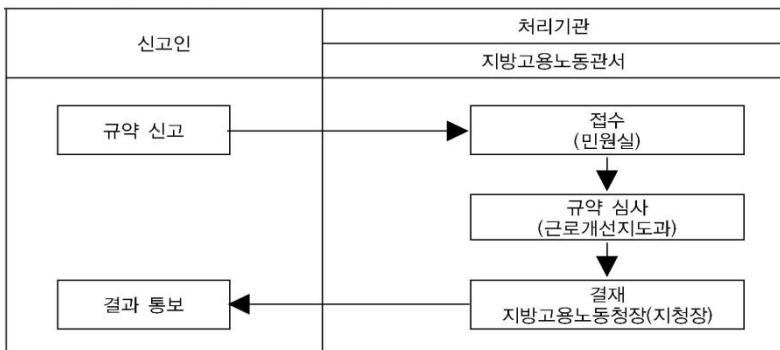
(뒤쪽)

작성요령

1. “사업명(사업장명)”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2. “내보너 성명”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명을 적습니다.
 3. “업종(주소면)”란에는 “사업자등록증”, “의업종·업태”를 적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란에는 “(연 근무인원) ÷ (연 사업장 가동 일수)”를 적습니다.
 5. “노동조합원 수”란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원 수를 적고, 없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6. “주소”란에는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
 7. “평균 재직기간”란에는 '(전체 근로자의 근로기간 합계) ÷ (전체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8. “임금 체계”란에는 사업(사업장)의 주된 임금 체계(호봉제/연봉제/직무급제/기타)를 적습니다.
 - ※ 직무급제는 개별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직무등급을 도출하고 직무등급에 기초하여 기본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9. “종전 퇴직금제”란에는 종전에 적용되었던 퇴직금제의 형태(단수제/누진제/기타)를 적습니다.
 10. “종전 퇴직금 처리”란에는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지 또는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로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소급하는지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11. “퇴직연금 소급기간”란의 작성은 다음에 따릅니다.
 - 1)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로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소급하는 경우에 작성
 - 2) 소급기간이 개인별로 다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 소급기간(직원별 소급기간 합산) ÷ (전체 직원 수)를 적음
 12. “퇴직급여제도 형태”란에는 신고(신규/변경) 후 해당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에 모두 표시합니다.
※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기입자에 대하여 확정 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한 경우를 말하며, 사용자가 두 제도를 모두 설정하고 기입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퇴직연금규약 폐지신고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

[] 혼합형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발급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명(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상시 근로자 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업종(주산품) 명 명		

구분	기재사항
평균 재직기간	개학 년
임금 체계	연봉제 / 호봉(연공급)제 / 직무급제 / 기타
퇴직급여제도 형태	<input type="checkbox"/>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input type="checkbox"/>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input type="checkbox"/>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른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뒤쪽 참조) <input type="checkbox"/> 퇴직급제도 [해당 사업(사업장)에 적용하던 퇴직급여제도에 모두 표시]
폐지하는 퇴직급여제도 형태	<input type="checkbox"/>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input type="checkbox"/>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input type="checkbox"/>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른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뒤쪽 참조) <input type="checkbox"/> 퇴직급제도 (폐지하는 퇴직급여제도에 모두 표시)
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제도 폐지 사유	<input type="checkbox"/> 퇴직금제도로 환원 / <input type="checkbox"/> 폐업 / 기타()
제도 폐지일	년 월 일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사업장)의 적립금	적립금액 (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혼합형의 경우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사업장)의 미납 부담금액(원)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처리방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연금제도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사업장 대표)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퇴직연금규약(폐지하려는 퇴직연금제도의 규약) 2. 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제도 폐지 사유가 폐업인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공무원 확인 사항) 4. 미납 부담금에 대한 처리방안(별지에 작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지지 80g/m²]

(뒤쪽)

작성요령

1. "사업명(사업장명)"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2. "대표자 성명"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명을 적습니다.
3. "업종(주산품)"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를 적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란에는 '(연 근무인원) ÷ [(연 사업(사업장) 가동 일수)]'를 적습니다.
5. "노동조합원 수"란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원 수를 적고, 없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6. "주소"란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
7. "평균 재직기간"란에는 '(전체 근로자의 근로기간 합계) ÷ (전체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8. "임금체계"란에는 사업(사업장)의 주된 임금체계(호봉제/연봉제/직무급제/기타)를 적습니다.
※ 직무급제 개별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직무등급을 도출하고 직무등급에 기초하여 기본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9. "퇴직급여제도 형태"란에는 폐지 이전에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적용되던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표시합니다.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기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한 경우를 말하며, 사용자가 두 제도를 모두 설정하고 기입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제도 폐지일"이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이 신고서는 폐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사업장)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한 적립부족액)을 말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